

**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**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계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**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**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
- 삼성KODEX건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형[주식] 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09.10.29 - 2010.10.28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대우증권, 우리투자증권, 현대증권, 에이치엠씨투자증권, 동양종합금융증권, 하이투자증권

**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**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0.07.07	표지  제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)  제48조(수익자에 대한 공고등)	집합투자업자: 삼성투자신탁 운용주식회사  이 투자신탁은 삼성투자신탁 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.  ①1~7.<현행과 동일> <신설>	집합투자업자 :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.  ①1~7.<현행과 동일> 8.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. 다만,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(모집)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. 9.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

		8.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.	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. 다만,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(모집)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. 10.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
2010.10.28	제38조(투자신탁보수)	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제41조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(이하 “분배금 지급기준일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산출하되, 구체적인 보수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일로 한다. ④1. 운용보수	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제41조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(이하 “분배금 지급기준일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산출하되, 구체적인 보수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일로 한다. ④1. 운용보수

		을: 연 1,000분의 3.3 2. 지정참가회 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.01 3. 신탁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 4. 일반사무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	을: 연 1,000분의 3.4 2. 지정참가회 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5 3. 신탁보수율: 연 1,000분의 0.2 4. 일반사무보수율: 연 1,000분의 0.4
	제41조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	①1. 지급기준일: 1월, 4월, 7월, 10월 마지막일 ④1. 법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	①1. 지급기준일: 1월, 4월, 7월, 10월 마지막일 및 회계기간 말일의 익영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④1. 법 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가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

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#### 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#### 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해임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
- 부합함

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
- 적정함

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
- 공정함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
- 적정함

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